

## 〈별표40〉 특정4대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4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특정4대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백내장	1. 노년백내장 2. 기타 백내장 3.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5 H26 H27
대장	4. 맹장의 양성 신생물 5. 충수의 양성 신생물 6.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7.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8. 하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9.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10.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11.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양성 신생물 12. 직장의 양성 신생물 13. 결장의 폴립	D12.0 D12.1 D12.2 D12.3 D12.4 D12.5 D12.6 D12.7 D12.8 K63.5
후각및편도의 질환	14.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15.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16. 만성 부비동염 17. 코폴립 18.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19.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J30 J31 J32 J33 J34 J35
유방의 비대	20. 유방의 비대	N62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4대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